

2021년도 제17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7. 12.(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 백대용(분과위원장), 송수현, 오영주, 이성엽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171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강나래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

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916건(안건번호 제2021-78505호~80133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78505호~78513호는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79099호~79101호는 국내에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공유 저작물이며, 리마스터링된 영상저작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여 별도의 보호기간 기산점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점, 설사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심의대상 영상 저작물들이 리마스터링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1-79587호~79589호는 심의를 요청한 불법복제물명과 채증 자료로 제시된 불법복제물의 내용이 다르므로 부결함.

그 밖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844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4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392개에 대한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1-8943호~9334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4개의 총 392개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79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17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전차 회의록 4쪽 민원인이 신고한 저작물명에 대한 비식별 처리에 대해 확인을 요청함.
- 참석 위원 전원: 회의록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비식별 처리에도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원안대로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게재되어 있어 영리 목적의 불법복제물 전송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B 위원: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C 위원: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음. 이견 없음.
- D 위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가결 의견임.
- E 위원: 같은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1-78505호~78513호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79099호~79101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각 판매 중인 사안임.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1939년 미국에서 공표된 영상저작물로, 국내에는 1957년 최초 개봉 후 수차례 재개봉을 거쳐 가장 최근에는 2021. 4. 28. 리마스터링 재개봉되었음.
외국인저작물의 보호기간은 국내법에 의하여 정해지는바, 위 영화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만료하였음.
관련하여, 리마스터링된 영상저작물을 2차적저작물로 보아 2차적저작물 이용권 내지 영상제작자의 저작인접권 보호를 위하여 리마스

터링 재개봉 시점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음.

그러한 주장이 타당하기 위하여서는 리마스터링된 영상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리마스터링한 음반을 2차적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개작 수준의 변화 없이 단순히 화질 등을 개선한 정도에 그치는 경우 별도의 창작성을 가진 2차적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임.

또한, 안건번호 제2021-79099호~79101호에서 전송하고 있는 파일명의 내용 및 형식으로 미루어 보아, 각 파일은 1939년에 공표된 위 영상저작물을 DVD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복제하여 전송 중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각 파일이 리마스터링되어 재개봉한 영상저작물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한 1939년 공표 영상저작물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영상저작물은 공유 저작물로서 일반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해당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79099호~79101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C 위원: 영상과 함께 제공되는 우리말 자막에 대해서는 2차적저작물

성을 논의할 수 있지 않은지?

- 강나래 전문위원: 어문저작물인 극본을 번역한 경우라면 2차적저작물성 판단에 대하여 재고해 볼 수 있을 것임. 다만,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 중인 자막 파일에 대해서는 누가 언제 작성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음. 이처럼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더더욱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임.
- C 위원: 국내에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공유 저작물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 E 위원: 대법원 판례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 리마스터링된 영상저작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심의대상 영상저작물들이 리마스터링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 의견임.
- B 위원: 리마스터링된 영상저작물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여 별도의 보호기간 기산점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해당 저작물은 공유 저작물인 것으로 사료됨.
- D 위원: 국내에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공유 저작물이며, 심의대상 게시물들이 리마스터링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1-79099호~79101호는 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79587호~79589호에서 심의 요청된 저작물명은 '블랙핑크 더 무비'로 2021. 8. 개봉 예정인 영화임.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각 게시물에서 전송 중인 영화는 2020. 10. 14. 개봉한 '블랙핑크: 세상을 밝혀라'임. 이 두 작품은 상이한 저작물임.
해당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79587호~7958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심의 요청된 저작물과 채증자료로 제시된 불법복제물의 내용이 다르므로 부결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1-79587호~79589호는 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78514호~79098호, 제2021-79102호~79586호 및 제2021-79590호~80133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음악, 출판물, 만화, 게임,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음악 '바라만 본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78514호는 2021. 6. 26. 발매한 MSG워너비 1집 수록곡 외 11곡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79099호~79101호 및 제2021-79587호~79589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78505호~79098호, 제2021-79102호~79586호 및 제2021-79590호~80133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1쪽부터 14쪽까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8943호~9334호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2021년 제17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17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7. 19.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송수현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